전등 교체 중 사다리 상부에서 추락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추락	사망 1명	55세	-

2022. 06.00(월) 00:00경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1층에서 피재자가 A형 사다리에 올라가 필로티 구조의 천장 전등 교체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

※ 필로티 : 기둥,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이벽,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
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**정상**)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(H≒5m) 전등 교체 작업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함

- (**비정상**) 경사가 있어 전도의 위험이 있는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 사다리가 전도되어 피재자가 추락함

발생원인

❶ 직접원인

- (**작업방법**)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 전등 교체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하나, 전도의 위험이 있는 A형 사다리를 사용

❷ 기여요인

- (**개인보호구 미착용**)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였고,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미실시

- (**위험성평가 미실시**) 추락 위험이 있는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

- (**교육 미실시**) 근로자 채용 시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

예방대책

❶ 추락 방지 미실시

-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·사용하여 떨어짐의 위험 방지

❷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

-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안전한 작업수행 가능토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 설치

❸ 위험성 평가 실시 철저

- 위험성평가 실시 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의 목적 및 방법, 책임자의 역할 등이 포함된 자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
-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 추정,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·실행 등을 포함한 정기·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

❹ 채용 시 교육 실시

- 근로자 채용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천장 전등 교체 작업 등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※ 본 ㅇㅍㅅ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